



## 일본의 교정공무원 관련법제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교정기획팀

### I. 들어가며

1908년 현행 형법과 함께 시행된 감옥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급양, 위생, 의료 등 그 시설 내의 생활에 관한 인도적 취급, 수형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 등을 규정하고 있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진보된 법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법제도 및 법사상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감옥법은 현대 행형의 이념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수차례에 걸친 개정의 시도가 있었다. 그 후 법무성에서 행형개혁회의의 제언을 받아 감옥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대용감옥제도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우선 감옥법을 수형자의 처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5년 5월 18일 제162회 국회에서 성립,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전면개정의 결과 신법에 의해 규정된 수형

자의 처우와 감옥법상의 미결구금자 등의 처우 간에 불합리한 법률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법무성은 미결구금자 등의 처우에 관한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조정하면서 진행하여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6년 6월 2일 제164회 국회에서 성립, 2008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법률명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약 100년 만에 감옥법의 전면개정이 실현된 것이다.

이 처우법은 교정공무원(형무관)의 인사·직제·직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러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인사·직제·직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형사시설에서의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처우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

### 1. 총 칙

처우법은 총 3편, 13개 장, 29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수용시설(형사시설, 유치시설 및 해상보안유치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수용자, 피유치자 및 해상보안피유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자의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처우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제1편 총칙 제1장에서는 통칙으로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형사시설에서는 제3조(형사시설), 제4조(피수용자의 분리), 제5조(실지감사), 제6조(의견청취), 제7조~제8조(형사시설시찰위원회), 제9조(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제10조(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제11조(재판관 및 검찰관의 순시), 제12조(참관), 제13조(형무관)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치시설로서 제14조~제15조(유치시설), 제16조(유치업무관리자 등), 제17조(피유치자의 분리), 제18조(실지감사), 제19조(순찰), 제20조(유치시설시찰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조직 등), 제22조(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제23조(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해상보안유치시설과 관련

된 사항(제25조~제2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피수용자 등의 처우

제2편의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서는 처우의 원칙(제1장, 제30조~제32조), 피수용자의 처우(제2장)와 관련하여 수용의 개시(제33조~제34조), 처우의 형태(제35조~제37조),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제38조~제39조), 물품의 대여 등(제40조~제43조), 금품의 취급(제44조~제55조), 보건위생 및 의료(제56조~제66조), 종교상의 행위 등(제67조~제68조), 서적 등의 열람(제69조~제72조), 규율 및 질서의 유지(제73조~제83조), 교정처우의 실시 등 그 밖의 사항(제84조~제179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유치시설에서의 피유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유치의 개시(제180조~제181조), 처우의 형태 등(제182조~제183조),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제184조~제185조), 물품의 대여 등(제186조~제190조), 금품의 취급(제191조~제198조), 보건위생 및 의료(제199조~제204조), 종교상의 행위(제205조), 서적 등의 열람(제206조~제209조), 규율 및 질서의 유지(제210조~제215조), 외부교통 등 그 밖의 사항(제216조~제24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해상보안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피유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유치의 개시(제241조~제242조), 처우의 형태(제243조), 기거동작의 시간대(제244조), 물품의 대여 등(제245

조), 금품의 취급(제246조~제253조), 보건위생 및 의료(제254조~제256조), 종교상의 행위(제257조), 서적 등의 열람(제258조~제260조), 규율 및 질서의 유지(제261조~제264조), 외부교통 등(제265조~제274조), 불복신청 등 그 밖의 사항(제275조~제28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보칙

제3편의 보칙에서는 대체수용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286조), 노역장 및 감치장(제287조~제289조), 사법경찰직원(제290조), 조약의 효력(제291조), 벌칙(제292조~제293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 기타 관련법제

상술한 처우법은 교정공무원(형무관)의 인사·직제·직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고, 그 하위 법령으로는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처우법시행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이하 ‘처우법시행규칙’), 「형무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훈령」(矯成訓 3258 법무대신훈령, 이하 ‘직무집행령’), 「형무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훈령의 운용에 대하여」(矯成 3259 교정국장 依命通達, 이하 ‘직무집행통달’ 이라 약칭) 등을 들 수 있다.



1)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에 형무소 59개, 소년형무소 8개, 구치소 7개, 형무지소 7개, 구치지소 110개가 설치되어 있다.

2) 또한 처우법에서는 형무관에 대한 연수 및 훈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즉, 처우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형무관에게는 피수용

#### 〈형무관의 인사·직제·직무 등 관련법제〉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형무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훈령

형무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훈령의 운용에 대하여(통달)

## Ⅲ. 형무관의 인사·직제·직무

### 1. 형무관의 인사

형무관은 형사시설에서 피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의 관리·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무성의 시설 등 기관인 형무소, 구치소 등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sup>1)</sup> 형무소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개선지도·교정교육을 통하여 사회복귀의 실현을 원조하고, 구치소에서는 수감 중인 피의자·피고인의 도주나 죄증 음폐를 방지함과 동시에 형사시설의 보안경비의 임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 이러한 형무관은 형사시설의 직원으로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95호) 제6조 제4호 공안직봉급표(1)의 적용을 받는 법무사무원 중에서 법무대신이 지정한다(처우법 제13조 제1항, 처우법시행규칙 제7조).<sup>2)</sup>

## 2. 형무관의 직제

처우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형무관의 계급에 대하여 법무성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처우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교정감, 교정장, 교정부장, 간수장, 부간수장, 간수부장, 간수라는 계급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교정감은 소장, 교정장은 소장·부장, 교정부장은 부장·조사관·수석교정처우관·과장·지소장, 간수장은 수석교정처우관·총괄교정처우관·과장·과장보좌·지소장·지소차장·지소과장, 부간수장은 초등과그룹일반직원인 교정처우관 또는 계장·주임교정처우관, 간수부장은 초등과그룹일반직원 또는 교정처우관, 간수는 일반직원에 각각 해당한다.

## 3. 형무관의 직무

직무집행령에서는 형무관의 복무 및 형사시설의 규율, 질서의 유지에 관한 직무의 집행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복무(제3조~제11조), 제3장에서는 장비품의 대여 등(제12조~제13조), 제3장에서는 직무(제14조~제48조), 제5장에서는 보칙(제49조~제50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서는 제14조에서 피수용자의 위치, 형무관이 직무를 행

하는 위치, 피수용자의 인원파악, 피수용자의 동정관찰 등 보안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수갑 또는 구속의를 사용하거나 자용증지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시찰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기록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형무관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피수용자의 입회 등, 제19조에서는 근무요령, 제20조에서는 신체의 검사, 제21조에서는 소지품의 검사, 제22조에서는 각 방 등의 검사, 제23조에서는 제지 등 조치의 유의사항, 제24조에서는 경비용구의 휴대 및 사용, 제25조에서는 경비용구의 제식, 제27조에서는 수갑 등의 사용상 유의사항, 제29조에서는 제1종수갑의 사용방법, 제30조에서는 제2종수갑의 사용방법, 제31조에서는 호송시의 사용방법, 제35조에서는 보호실에의 수용시 유의사항, 제36조에서는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제38조에서는 권총 등 사고의 방지, 제39조에서는 권총 등의 휴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IV. 피수용자의 정보보호·공개 관련법제

### 1. 피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정시설에 있어서의 피수용자의 개인정보보



자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피수용자의 처우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 및 훈련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법무성보유개인정보보고관리규정」(법무대신 훈령 제303호<2005>)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이용확대를 고려하여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장 제1조). 이 법률의 제1장 제2조에서는 행정기관과 개인정보 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2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제3조~제9조),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파일(제10조~제11조), 제4장에서는 개시·정정 및 이용정지(제12조~제44조), 제5장에서는 압착(제45조~제52조), 제6장에서는 보칙(제53조~제57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무성보유개인정보보고관리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제7조의 규정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지침(2004년 4월 2일 각의결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법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법무성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규정 총괄 개인정보보호관리자(제3조), 부국 등 개인정보보호관리자(제4조), 개인정보보호보조관리자(제5조), 개인정보보호보담당자(제6조), 보유개인정보

의 제공(제20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피수용자의 처우관련정보의 공표

피수용자의 처우관련정보의 정기적 공표에 대하여는 종래 피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시설경비 등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충분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어 교정관구에 의한 관내처우정보의 정기적 공표나 사망사안 이외의 특수사안공표기준 등이 책정되는 등 적극적인 공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003년 이후 처우정보의 정기적인 공표와 관련해서는 법무성교정국장의 통지로서 ‘관내처우정보 등의 정기적 공표에 대하여’(통지, 법무성교총 제2944호, 2003년 7월 31일)와 특수사안의 공표와 관련해서는 법무성교정국장 통달로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특수사안에 관한 공표에 대하여’(법무성교총 제3178호, 2003년 8월 20일)를 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선 ‘관내처우정보 등의 정기적 공표에 대하여’에서 규정하는 공표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1의 (1)에서는 관내교정시설정보(모든 교정관구 공통)로서 월말현재수용인원, 징벌사범별수벌(受罰)인원, 사건송치건수, 보호방사용건수, 기타 관내교정시설에 관한 총괄적 상황을, (2)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을, (3)에서는 익월의 각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에서 취재 가능한 것을, (4)에서는 교정국에서 제공하는 전

국의 수용통계 등을, (5)에서는 연간 관내수용통계 등(1년에 1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2의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1)에서 원칙적으로 1월에 1회, 담당기자들에 대하여 팩스를 사용한 연락, 기자설명회 또는 기자회견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에서는 연간 1회 이상 기자들에 대한 시설견학 설명회,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처우관련정보의 정기적 공표

공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교정시설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말현재 수용인원</li> <li>• 징벌사범별 수범인원</li> <li>• 사건송치건수</li> <li>• 보호방 사용건수</li> <li>• 기타 관내교정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상황</li> </ul> </li> <li>■ 홍보관련정보</li> <li>■ 전국의 수용통계, 기타</li> </ul>
공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월 1회, 담당기자들에게 팩스로 연락, 시자설명회 등을 개최</li> <li>■ 연 1회 이상 기자들에 대한 시설견학설명회, 기자간담회를 실시</li> </ul>

다음으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특수사안에 관한 공표에 대하여’에 의하면 1에서 공표의 대상으로 되는 사안으로서 (1) 피수용자의 수상(受

傷)사안(직원의 비위행위에 의하여 수상한 경우, 피수용자에 의한 폭행 등으로 수상한 경우, 작업이나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후유증의 발생이 명확하게 된 경우), (2) 도주사안, (3) 폭동사안, (4)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화재, 피재상안, (5) 식중독으로 인정된 사안, (6) 부정한 경리 등 국가의 기관으로서 부적정한 운영이 행해진 사안, (7) 기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의 공표의 방법 등에서는 (1) 공표는 가까운 대표적 언론사에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기자설명회 또는 기자회견의 실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에서는 공표는 공표할 수 있는 시기 또는 공표해야 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피수용자 처우관련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표대상이 되는 사안

#### 피수용자의 사망사안(예)<sup>3)</sup>

- 피수용자간의 살상행위 등에 의한 사망
- 보호방 수용 및 기죽수갑 사용 중과 그 해제 후 대략 1주일 이내의 사망



3) 이것은 법무성교정국장 통달로서 “피수용자의 사망사안에 관한 공표에 대하여”(법무성교총 제541호, 2003년 2월 27일)에서 규정하고 있다.

- 직원에 의한 제압 등의 행위 중과 그 제압 등의 행위 후 대체로 1주일 이내의 사망
- 자살
- 작업사고, 식중독, 그 외의 사고에 의한 사망
- 기타 사법해부의 실시로 파악한 사망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특수사안

- 피수용자의 수상사안
  - 직원의 비위행위에 의하여 수상한 경우
  - 피수용자에 의한 폭행 등으로 중상을 입은 경우
  - 작업 또는 교육활동 중 등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된 경우
- 도주사안
- 폭동사안
-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화재, 화재사안
- 식중독으로 인정된 사안
- 부정경리 등 국가의 기관으로서 부적정한 운영이 있었던 경우
- 기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 법률은 일본의 교정공무원의 인사·직제·직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하며,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직무집행령, 직무집행통달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수용자의 처우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통지 및 통달에서 공표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의 사망사안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특수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관내처우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본의 관련법제 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정보공표의 필요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우법은 형사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형사시설의 기본 및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상 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